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1년 1월 10일

○ 회부일자 : 201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장학생의 자격, 추천 기준과 장학금의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
- 그 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·보완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」 기준에 따라 정비

4. 주요골자

- 장학생의 자격기준과 추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(안 제2조, 제3조)
- 장학생 선발 정원을 대원의 100분의 5 이내로 정비함(안 제5조)
- 공납금의 지급 범위를 명확화 하고 지급금액 조정함(안 제6조)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」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4조)
 - 목적 조항 약칭 금지에 따라 약칭 삭제 및 간소화 함(안 제1조)
 - 목적 조항 약칭 금지에 따라 약칭을 정함(안 제2조, 제3조)
 - 인용법령 표기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“에 의하여”를 “에 따라”으로 변경
-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(안 제4조, 제5조,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

한바

- 장학생에 대한 자격기준과 추천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학금의 지급 금액 산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으며
-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신설된 전담의용소방대원의 자녀를 포함시켰으며
- 기타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
-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